

의안번호	제 26 호
의결연월일	

의결사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4. 6. 30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 호
----------	--------

제출일자	2004. 6. 30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장학기금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개정함(안 제2조)
- 다. 기금의 집행범위를 개정함(안 제4조)
 - 당해연도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50 백만원 범위내에서
- 라.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는 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함(안 제8조제3호)
- 마. 기금의 지급범위를 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및 제12조)
 - 우수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상사업비 →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
- 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회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 사. 추진위원회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개정함 (안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127백만원(2004년도 집행액)

다. 합의 : 해당없음

다. 기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4. 5. 29 ~ 6.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우수고등학교”를 “인재”로 한다.

제1조중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인재육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우수고등학교”를 “인재”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당해연도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를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50백만원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우수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우수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며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추진위원회”를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호중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를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학교”를 “학생”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우수고등학교”를 “인재”로 한다.

4. 고등학교 : 교육환경개선지원금

제10조제1항중 “매 학년의 분기별”을 “매 학년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사 및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을 “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은”으로 한다.

제11조 제목중 “장학금”을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우수고등학교” 를 “인재”로 하며,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목적외 사용시에는 전액 회수 조치한다.

제12조 제목을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을 “지원금 지급 등”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매년 관내 고등학교중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3조중 “우수고등학교” 를 “인재”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을 “교육환경개선지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교육환경 개선”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우수고등학교 육성”를 “학교발전 및 인재육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p>제 명 : 사천시<u>우수고등학교</u>육성장학 기금조성및운용조례</p>	<p>제 명 : -----<u>인재</u>-----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u>인재</u> <u>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u> <u>학교 지원</u>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재</u> <u>육성</u>----- -----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 사천시<u>우수고등학교</u>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 -----<u>인재</u>----- -----</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생략) ②(생략) ③기금의 집행은 <u>당해연도 수입금의</u> <u>20퍼센트 범위안에서</u> 지출한다.</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u>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u> <u>250백만원 범위내에서</u>-----.</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생략) 2.<u>우수고등학교</u> 육성사업 3.기타 우수학생 및 <u>우수고등학교</u>육성 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u>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u> 에서 인정하는 사업 ②(생략)</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u>고등학교</u> ----- 3.----- <u>고등학교</u> ----- ----- <u>사 천 시 인 재 육 성 추 진 위 원 회</u> ----- 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안)
<p>제8조(기금 지급대상)</p> <p>1.(생략)</p> <p>2.(생략)</p> <p>3. <u>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u></p> <p>4.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u>학교</u></p> <p>5. (생략)</p> <p>6. <u>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u></p>	<p>제8조(기금 지급대상)</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 <u>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u></p> <p>4. ----- ----- -- <u>학생</u></p> <p>5.(현행과 같음)</p> <p>6. <u>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u></p>
<p>제9조(기금의 지급범위) ①(생략)</p> <p>1.(생략)</p> <p>2.(생략)</p> <p>3.<u>교사 : 포상금</u></p> <p>4.<u>올해의 우수고등학교 : 상사업비</u></p> <p>5.(생략)</p> <p>②기금의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천시<u>우수고등학교</u> 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제9조(기금의 지급범위) ①(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삭제></p> <p>4.<u>고등학교 : 교육환경개선 지원금</u></p> <p>5.(현행 같음)</p> <p>②----- ---<u>인재</u>----- -----.</p>
<p>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①(기금의 지급시기)①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u>매 학년의 분기별</u> 또는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u>교사 및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u> 매학년 상반기중에 지급 결정을 한다.</p>	<p>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①----- ----- ---<u>매 학년별</u>----- ----- -----.</p> <p>②<u>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은</u>----- -----.</p>

현 행	개 정(안)
<p>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생략) 2.(생략) 3.기타 품위훼손 등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적격하다고 사천시<u>우수 고등학교</u>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p><신설></p> <p>제12조(올해의 우수고등학교육성 지원) ①매년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기금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한다</p>	<p>제11조(기금 지급정지)① ----- -----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u>인재</u> ----- ②<u>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목적외 사용시에는 전액 회수 조치한다.</u></p> <p>제12조(지원금 지급 등) ①매년 관내 고등학교중 교육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한다.</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명칭)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u>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p>	<p>제13조(명칭)----- -----<u>인재</u>----- -----</p>
<p>제1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생략) 2.<u>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u> 대상 학교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 3.<u>우수고등학교 육성</u>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 4.(생략) 5.기타 <u>우수고등학교 육성</u>에 따른 제반 사항 	<p>제16조(기능)----- ----- 1.(현행과 같음) 2.<u>교육환경개선지원</u> ----- ----- 3.<u>교육환경 개선</u>----- ----- 4.(현행과 같음) 5.-----<u>학교발전 및 인재육성</u>----- -----</p>

관계법령발취

지방자치법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改正 1994. 3. 16>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改正 1994. 3. 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物건 및 權利를 말한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定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定하는 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당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後 80日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各各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运用到 關한 事務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關하여는 第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 責任에 關한法律을 準用한다.